

심 사 보 고 서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2. 3.10.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22. 3.16.

4. 상정일자 : 제3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2022. 4. 5.)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2. 4.11.)

- 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 의안번호 제3155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자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무활동의 37.8% 규모인 275억 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비는 코로나19 확산 대응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을 위해 '비용자성 사업비'를 1,109억 1백만 원에서 1,384억 1백만 원으로 275억 원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은 '예치금'을 700억 8천 7백만 원에서 425억 8천 7백만 원으로 275억 원 감액하였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신정희)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3155호,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2.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코로나 19 피해기업 자금공급을 위해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잔액이 지속 증가하였고, '22년 4무 안심금융 1조원 공급에 따른 무이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금 지출액 27,500백만원을 추가 편성함.
- 나. 기금 지출계획 중 이차보전금 136,276백만원 반영에 따라, 예치금이 42,587백만원으로 변경되어 정책사업(재무활동) 지출계획은 당초 대비 37.8% 변경되었음.
 - 이차보전금 : 108,776백만원 → 136,276백만원 (증 27,500백만원)
 - 예치금 : 70,087백만원 → 42,587백만원 (감 27,500백만원)

○ 2022년 기금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세부사업	당초(A)	변경(B)	증감 (B-A) (증감률)
합 계	383,743	383,743	-
중소기업 금융지원	310,901	338,401	27,500(8.8%)
중소기업직접융자	200,000	200,000	-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	108,776	136,276	27,500
자금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216	216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지원	607	607	-
기금업무대행수수료	1,302	1,302	-
재무활동	72,837	45,337	△27,500(△37.8%)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원리금 상환	2,750	2,750	-
예치금	70,087	42,587	△27,500
행정운영경비	5	5	-
기금관리비	5	5	-

3. 검토의견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의 변동없이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의 세부사업중 **예치금**을 △275억원 감액하고, 다른 정책사업인 **중소기업금융지원**의 세부사업중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에 275억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관련 법령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당초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을 증·감 조정하여 지출계획 하려는 것으로
 - ①정책사업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당초 계획(3,109억 100만원)보다 8.8%, 275억원 증액하여 의회의 의결 사안에 해당하지 않으나,

- ②재무활동은 당초 계획(700억 8,700만원)보다 △37.8%, △275억원 감액하여 지출계획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에는 정책사업을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로 정하고 있어 재무활동에 포함되는 예치금의 경우에도 정책사업에 해당하여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표 3-1〉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지출계획 변경현황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당 초 (A)	기 금 운 용 계 획 변 경 안 (B)	증 감 (C = B - A)	증 감 륜 (D = C / A)
계	383,743	383,743	0	-
중 소 기 업 금 용 지 원	310,901	338,401	27,500	8.8
중 소 기 업 금 용 지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310,901	338,401	27,500	8.8
중 소 기 업 직 접 용 자	200,000	200,000	0	-
시 증 은 행 협 력 자 금 지 원 이 차 보 전 금	108,776	136,276	27,500	8.8
자 금 통 합 관 리 시 스템 유 지 보 수	216	216	0	-
서 울 형 마 이 크 로 크 레 디 트 지 원	607	607	0	-
기 금 업 무 대 행 수 수 료	1,302	1,302	0	-
재 무 활 동	72,837	45,337	△27,500	△37.8
내 부 거 래 지 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2,750	2,750	0	-
통 합 재 정 안 정 화 기 금 (통합계정) 예수금입리금상환	2,750	2,750	0	-
보 전 지 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70,087	42,587	△27,500	△37.8
예 치 금	70,087	42,587	△27,500	△37.8
행 정 운 영 경 비	5	5	0	-
행 정 운 영 경 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5	5	0	-
기 금 관 리 비	5	5	0	-

※ 백만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 것임

자료근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번호 3155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재편집

- 아울러,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금 규모를 확대하고자 지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 동 계정의 설치근거인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1.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2.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

1)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제1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2. 4. 6(수) 10:00 ~ 18: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예산안 등 조정 소소위원회 운영

○ 제2차 소위원회

- 일 시 : 2022. 4. 7(목) 10:00 ~ 20:00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소위원회 위원
- 내 용 : 예산안 등 조정 소소위원회 운영

VII. 부대의결 : 「생략」

VI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2022. 4.11.)

2022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3155
----------	------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1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 11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코로나 19 피해기업 자금공급을 위해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잔액이 지속 증가하였고, '22년 4무 안심금융 1조원 공급에 따른 무이자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전금 지출액 27,500백만원을 추가 편성함.

나. 기금 지출계획 중 이차보전금 136,276백만원 반영에 따라, 예치금이 42,587백만원으로 변경되어 정책사업(재무활동) 지출계획은 당초 대비 37.8% 변경되었음.

- 이차보전금 : 108,776백만원 → 136,276백만원 (증 27,500백만원)
- 예치금 : 70,087백만원 → 42,587백만원 (감 27,500백만원)

○ 2022년 기금운용계획 지출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정책/세부사업	당초(A)	변경(B)	증감 (B-A) (증감률)
합 계	383,743	383,743	-
중소기업 금융지원	310,901	338,401	27,500(8.8%)
중소기업직접융자	200,000	200,000	-
시중은행협력자금지원 이차보전금	108,776	136,276	27,500
자금통합관리시스템유지보수	216	216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지원	607	607	-
기금업무대행수수료	1,302	1,302	-
재무활동	72,837	45,337	△27,500(△37.8%)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수금 원리금 상환	2,750	2,750	-
예치금	70,087	42,587	△27,500
행정운영경비	5	5	-
기금관리비	5	5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팀 김두만 (☎2133-5190)